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6. 5. 1.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목 차

제1장 총칙	5
제1조 (목적)	5
제2조 (의무)	5
제3조 (적용)	5
제4조 (용어의 정의)	6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8
제5조 (공급계획)	8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8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8
제8조 (승낙의 의무)	9
제9조 (계약의 준수)	10
제10조 (해약)	12
제11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12
제3장 공사 및 검사	14
제12조 (공사시행)	14
제13조 (연소기 등의 연결)	14
제14조 (가스계량기)	15
제14조의2 (온압보정장치)	16
제15조 (공사비)	17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18
제16조 (검침)	18
제17조 (계량의 단위)	19
제18조 (사용량의 산정)	19
제18조의2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20

제5장 요금	21
제19조 (요금)	21
제20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21
제21조 (요금의 수납)	23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25
제23조 (10원단위 미만처리)	25
제24조 (이의 신청)	25
제25조 (요금계산의 정정)	26
제26조 (보증금)	26
제27조 (도시가스 요금경감)	28
제6장 공급	29
제28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29
제29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29
제30조 (공급중지)	30
제31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31
제7장 안전	32
제32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32
제3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32
제8장 기타	33
제34조 (문서보관)	33
제35조 (사용장소의 출입)	33

부칙	34
별표	38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38
[별표2] 시설분담금	39
[별표3] 가스요금표	41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42
서식	43
[서식1]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43
[서식2]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44
[서식3]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신청서(가정용)	48
[서식4]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신청서(가정용 외)	49
[서식5] 도시가스공급 (중지, 중지해제) 신청서	50
[서식6]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51
[서식7]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53
[서식8] 듀얼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양식	56
[서식9] 도시가스 사용용도 변경 신청서	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부산도시가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법,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결과 관리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Nm³의 총열량을 말한다.
- ②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한다.
- ③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한다.
- ④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한다.
- ⑤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 한다.
- ⑥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 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한다.
- ⑦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 ⑧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한다.
- ⑨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⑩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말한다.
- ⑪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⑫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 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 ⑬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 ⑭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 ⑮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한다.

- ①⑥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 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 ①⑦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 ①⑧ “폐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에서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용착,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①⑨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디지털,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 ②⑩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 ②⑪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⑫ “검침”이란 가스사용자의 계량기 지침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육안, 사진, 원격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공급계획)

회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시장이 확정 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 ① 가스공급 및 사용계약(명의변경 포함), 사용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1, 서식2, 서식9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회사에 신청하고, 변경된 용도는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계약(명의변경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가스사용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공급신청 접수·처리결과(수요자 성명 또는 건물명, 소재지, 공급신청 가구수, 공급승낙여부 및 사유, 결정 통지일자 등)을 비치하여 3년간 기록을 유지토록 한다.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의 납부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가스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한다. 또한 공급중지 후 재사용 시 회사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54호)에 따라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 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취사전용 시설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월사용예정량이 10만^m 이상인 경우, 회사는 기존 또는 신규 수요처에게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승낙의 의무)

- ① 회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다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6.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8. 가스공급을 위한 제반 서류가 미비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준수)

-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

용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4. 가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계약 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익익월에 부과하며 연간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단,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체료 일할계산 : 연체원금×연체일수×연체요율(0.24)/365일)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발생시점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추정사용량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 계량기 교체비용 + 추정사용량의 5배

- 온압보정장치 : 추정사용량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추정사용량의 3배

3.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추정사용량의 5배

- 단,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스사용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추정사용량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추정사용량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추정사용량의 5배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서식8]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10조 (해약)

-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폐지예정일을 해약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시설을 철거하여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 ③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⑤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의 해약일로 한다.

제11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 ① 계약기간 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 할 수 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연소기 등의 연결)

-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가스 연료 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공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 ④ 회사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연결시 안전점검 비용을 가스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가스 연결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시공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가스계량기)

-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메인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소, 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교체·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 폐기는 회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주택용(중양난방용은 제외) 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하며, 비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한다. (2026. 5. 1. 개정)
- ④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재검정기간 도래 이전에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성능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지한다. 단,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동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성능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 회사는 가스계량기를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한다.

- ⑥ 통합원격검침시스템 또는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특수계량기 설치 및 교체 등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2026. 5. 1. 개정)
- ⑦ 가스사용자는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 누락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확인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온압보정장치)

-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사용량 측정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59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온압보정장치 표준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는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35호)에 의거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온압보정장치가 정기검사 결과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온압보정장치의 유지관리 및 정기검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비)

-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65mm초과 가스차단장치 설치공사비 및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인입배관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54호)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 ④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시설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과 폐지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⑥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⑦ 당해 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요자와 협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 ⑧ 택지개발지구내 가스 공급시설은 회사와 택지개발지구 사업자가 협의

하여 택지개발지구 사업자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6조 (검침)

-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준주택 등 취사전용세대는 분기검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외 수요가와 별도로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월 검침된 지침과 직전 검침월 지침간의 차이를 당월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원격검침 기능이 있는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지정 검침일에 원격지침을 회사에 제공하는 등 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한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의 확인검침
 6. 세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 ③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자가검침을 실시하는 경우 계량기 지침이 상이하거나, 가스계량기 고장(3개월 지침 미변동 포함) 또는 가스사용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임의기재 등으로 검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안전점검시 확인 검침을 하고 해당 검침값으로 요금을 고지 할 수 있다.
-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가스계량기의 지침과 원격검침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제17조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Nm³로 하며 검침시 정수부분만 검침한다.

제18조 (사용량의 산정)

-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제2항에 의한 사용량(Nm³)에 한국 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을 곱하여 사용량(MJ)을 산정한다.
-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용자 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 산정식에 의해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
 - 사용량 = 검침량 × 온압보정계수
-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자가검침 미이행 등의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가스계량기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추정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한다.
 1. 전년동월사용량
 2. 전년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 적용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가목을 따른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한다.

- ⑤ 제28조제1항제3호의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가스사용자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한다.

$$V = \frac{V_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m^3)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Pa)
 V_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m^3)

$$V = \frac{V_1 \times (10,332 + P)}{10,332 + 100}$$

- V = 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m^3)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mmAq)
 V_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m^3)

제18조의2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 ①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는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
- ② 제1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또는 오작동 등으로 보정값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8조의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한다.
- ③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가스사용자는 제18조의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한다.

제5장 요금

제19조 (요금)

-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 요금은 시장 승인한 별표3의 요금표를 적용한다.
-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한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가스요금을 조정할 경우 월사용량은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단, 요금단가 변경에 따른 일수계산 시에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
- ⑥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다.

제20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영업용1, 영업용2,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①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 ② 영업용1 요금은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및 연료전지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 중 영업용2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 ③ 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수영장,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 ④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가스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는 하절기만 냉난방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 ⑥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 장소 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일 법인은 사용자의 요청으로 회사와 협의 후 가스 사용량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 기준상 계열회사 등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서 계열회사 등 중 법인 1개 이상이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계열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회사와 협의 후 계열회사 등 중 2개 이상의 사업장 또는 법인의 가스 사용량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⑦ 열병합용1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열병합용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한다.
- ⑧ 열병합용2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시스템은 열병합용1을 적용한다.
- ⑨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에 사

용되는 가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택용요금을 적용한다.

- ⑩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 ⑪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 ⑫ 연소기 변경 등으로 주된 사용용도가 변경된 경우 가스사용자는 서식 9 “도시가스 사용용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기 용도 구분에 적합한 용도를 적용한다.
- ⑬ 회사는 가스사용 용도가 제20조제1항 내지 제11항의 용도 적용 기준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요금의 수납)

-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MJ)에 따라 별표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 (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한다.
-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해 별도로 독촉고지서를 송달(추가로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안내)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한다. 단,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계량기 별로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중지로 사용 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① 요금은 매월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한다. 다만,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가스사용자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시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기한 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영업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⑥ 시장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다.

제23조 (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24조 (이의 신청)

-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

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을 가스사용자가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적용 시점의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로 한다.
- 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옥내 가스배관 손상, 가스보일러 이상으로 누출된 경우 회사는 누출량을 확인하여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추정사용량과 비교 산정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한다.

제25조 (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사용시점별 요금단가를 적용하며, 그 오차분의 요금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정산한다.

$$\text{정산량} = \text{계량된 가스사용량} \div (100\% \pm \text{사용공차})$$

제26조 (보증금)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1,000m³/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3.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4. 제3항에 의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연체할 경우
 5.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6. 최초 공급 후 보일러 시운전(동과방지 운전 포함)을 위한 가스사용자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 ② 제1항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산정한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가목(월 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월 사용예정량. 단, 업종의 특성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은 별도로 산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하며, 가스사용자는 보증보험증권의 만기일 도래 10일전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 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스요금 징수 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회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3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한다.
- ⑤ 회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27조 (도시가스 요금경감)

- 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및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에 따른다.
- ②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령 또는 규정이 있을 시 해당 수요가의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공급

제28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
 1. 열량 : 최고열량 - 44.37 MJ/Nm³(10,600 kcal/Nm³)
 최저열량 - 41.02 MJ/Nm³(9,800 kcal/Nm³)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5kPa, 최저압력 - 1kPa
 단, 상기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 가중평균열량은 한국 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회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호)에 따른다. 단,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 6.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공급중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3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문자메세지,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보증금,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문자메세지, 전화, 안내문 등)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납부가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계량기교체 등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 4. 제9조의 계약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른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도시가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2회 이상 계약체결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때
-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급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회사는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공급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가스 사용을 폐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 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배관절단 후 안전 마감 조치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③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7장 안전

제32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 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기타

제34조 (문서보관)

-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점검·조사·가스 사용제한·공급중지 등에 관한 조치, 체납 활동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부 칙(1982.0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8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7.09.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7.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8.1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06.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1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3.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04.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9.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07.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0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7.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9.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05.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06.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1.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0.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0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2.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05.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제6조제2항 관련)

등 급	2.5	4	6	10	16	25	40	65	100
표준가스소비량 (Nm ³ /h)	2.5	4	6	10	16	25	40	65	100

1.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 101m³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한다.
 - 가. 주택용 수요자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나. 주택용 외 수요자 :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2. 표준가스소비량(m³/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m³ (10,144 kcal/Nm³)으로 한다.

[별표2] 시설분담금(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관련)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단일 또는 복수 적용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단, 주택용 이외의 가스설비 중 회사가 인정하는 예비용 설비 또는 증설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시설분담금

- 납부대상 : 전체 가스사용자
- 부담액 : 기준단가(원/m³) × 표준가스소비량(m³)
- 기준단가 : 22,169원/m³

2. 취사전용시설분담금

-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부담액 : 기준단가(원/m³) × 표준가스소비량(m³)
- 기준단가 : 110,017원/m³ [1세대당 최대 부담액 : 176,020원]

3.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 납부대상 : 100M 당 가정난방용 기준 20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
 - 100M 당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 합계가 77m³/h 미만인 경우로 가정난방용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가정난방용 표준가스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부담액 : 기준단가(원/m³) × 표준가스소비량(m³)
- 기준단가(원/m³) :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 - (시설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84,293원/m, 적용률은 30%로 적용한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에 따른 총 가스사용자의 일반시설분담금을 적용하며,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352,580원/세대를 적용한다.

○ [참조] 세대별 분담금 기준 단가 (가정용 기준)

세대수 (등급합계)	19 (76등)	18 (72등)	17 (68등)	16 (64등)	15 (60등)	14 (56등)	13 (52등)	12 (48등)
기준단가 (원/㎥)	1,907	8,141	15,109	22,948	31,833	41,986	53,701	67,369

세대수 (등급합계)	11 (44등)	10 (40등)	9 (36등)	8 (32등)	7 (28등)	6 (24등)	5 (20등)	4 (16등)
기준단가 (원/㎥)	83,522	102,906	126,597	156,211	194,286	245,052	316,126	422,735

세대수 (등급합계)	3 (12등)	2 (8등)	1 (4등)
기준단가 (원/㎥)	600,419	955,785	2,021,884

○ 등급 산정 방법

1. 계량기 등급 = 표준가스소비열량(J/hr) ÷ 기준열량 (J/Nm³)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가스계량기 등급을 정하고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100등급 이하에 한함.)
2. 101등급 이상은 별표1에 의한 등급산정 방법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산정한 표준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3.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상위등급의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분담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한다.
4. 상위등급이라 함은 한 단계 위의 등급을 말한다.

[별표3] 가스요금표(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MJ]

구 분		기본요금	사용량 요금		비 고
			월 사용량	MJ당 단가	
기본 요금	취사전용	900원/월			-부가가치세 별도
	취사·난방용				
주택용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영업용1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영업용2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업무난방용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산업용1		-	100,000m ³ 이하	도매요금+공급비용	
산업용2		-	100,001m ³ ~500,000m ³ 이하		
산업용3		-	500,001m ³ ~ 2,000,000m ³ 이하		
산업용4		-	2,000,001m ³ ~ 3,000,000m ³ 이하		
산업용5		-	3,000,001m ³ 이상		
열병합용1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용2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연료전지용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수송용		-	MJ당	도매요금+공급비용	

1. 도매요금은 도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원료비를 적용한다.
2.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취사용 및 개별난방에만 적용하며 취사전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용자에게 적용한다.
3. 용도별 절기구분은 도매요금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4.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산업용 요금의 월 사용량 구분은 공급비용 산정 시 당해 승인받은 열량을 기준으로 한다(승인열량은 홈페이지 별도 게시).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제14조제3항 관련)

1. 일반계량기 교체비용

단위 : 원/월

계량기 등급	OIML (KS)	G1.6 (2.5등급)	G2.5 (4등급)	G4 (6등급)	G6 (10등급)	G10 (16등급)	G16 (25등급)	G25 (40등급)
금액		170	250	420	1,250	2,390	2,760	3,970
계량기 등급	OIML (KS)	G25 초과 (40등급 초과)						
금액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계상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기준)

- 가. 주택용(중앙난방용은 제외)에 대한 일반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 나. 교체비용은 계량기 구입비, 설치비, 수선비, 정기점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비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아래금액은 특수계량기에 대한 월별 선부과 금액으로, 특수계량기 구매·관리비용에서 일반계량기 구매·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비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은 제1호의 일반계량기 교체비용과 아래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위 : 원/월

계량기 종류	구분	등급			
	OIML (KS)	G1.6 (2.5등급)	G2.5 (4등급)	G4 (6등급)	G4 초과 (6등급초과)
일반막식	원격	189	189	189	별도계상
듀얼지시부(디지털) /누출점검용 계량기	비원격	312	318	309	
	원격	392	398	388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비원격	873	879	902	
	원격	952	959	982	

* 본 금액은 계량기 교체비용 일시금에 기준금리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월별 부과 금액입니다.

3. 부가가치세 별도

[서식1]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부산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신청정보	
고객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가정용 <input type="checkbox"/> 영업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재지	
가구수	
면적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p>(주)부산도시가스는 귀하의 도시가스 공급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수집항목	고객유형, 고객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	도시가스 공급 계약체결 및 서비스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종료(공급해지) 또는 배관공사 취소 시까지		
<p>※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도시가스 공급신청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수집항목	E-mai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목적	공급계약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 E-mail 발송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종료(공급해지) 또는 배관공사 취소 시까지		
<p>※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도시가스 공급신청 계약체결 관련 E-mail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p>			
<p>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p>			
		년 월 일	(서명,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주)부산도시가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계약자(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값, 원격검침값, 사용요금, 연체기록, 결제기록	* 도시가스 사용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 본인 확인 및 고객식별키(Safe-Key) 발급 * 서비스 변경 및 해지 * 사용량 검침, 요금청구/수납/추심 * 고객 요구사항 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세금계산서 발행	<u>이용목적 만료 시까지</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ens.com/busan/main/index.do#>)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게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이메일	* E-mail 청구서 서비스 제공	<u>이용목적 만료 시까지</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알림톡, 문자 수신번호	* 알림톡, 문자 청구서 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알림톡/문자/E-mail 청구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u>나이스평가정보(주)</u>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u>본인 인증을 위한 Safe-Key 발급</u>	<u>이용목적 만료 시까지</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u>나이스평가정보(주)</u>	성명, 고객식별키(Safe-Key)	<u>신용정보 조회, 체납 지 채무불이행 등재</u>	<u>이용목적 만료 시까지</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여도 도시가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계약의 이행/편의증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일반사항은 당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고객(본인) _____ (서명/인)

20 년 월 일

[서식3]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신청서(가정용)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 신청서

[가정용]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① 가스사용주소				
② 신청인		③ 연락처		
④ 폐지사유		⑤ 폐지요청일자		
⑥ 비고				
⑦ 계량기현황	기물번호	모델 및 등급	철거 지침	봉인유무

공급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폐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통보자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개인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p>수집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사용량, 사용금액, 결제기록, 접속기록, 공급중지기록 ("서비스 이용정보") 	<p>수집 및 이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입·심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 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홈페이지(www.b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청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p>· 이용기간 : 도시가스 공급신청(변경)일 ~ 해약일</p> <p>· 보유기간 : 공급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공급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부턴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p>	<p>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p>
<p>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법률에 따라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동의일</p> <p>년</p> <p>월</p> <p>일</p>	<p>고객명</p> <p>(인 / 서명)</p>

[서식4]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신청서(가정용 외)

도시가스사용시설 폐지 신청서

[가정용 외]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① 가스사용주소				
② 신청인			③ 연락처	
④ 폐지사유			⑤ 폐지요청일자	
⑥ 계량기현황	기물번호	모델 및 등급	철거 지침	봉인유무
⑦ 계량기교체비 환급 안내	계량기철거에 따라, 계량기교체를 위해 납부하신 계량기교체비가 환급됩니다.(공급규정제14조4항) - 환급 계좌 :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가스고객명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점검 등을 시행한 경우,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⑧ 비고				

공급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폐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동보자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입·심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홈페이지(www.b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청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계량기 교체비 환급 (환급 발생 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기간 : 도시가스 폐지신청일 ~ 폐지처리 완료일 또는 계량기교체비 환급일 중 늦은 날 보유기간 : 공급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폐지처리 완료 후 5년간.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법률에 따라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

[서식5] 도시가스공급 (중지, 중지해제) 신청서

도시가스공급 (중지, 중지해제) 신청서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① 주소				
② 신청인			③ 연락처	
④ 중지해제 이유			⑤ 중지요청일	
⑥ 중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 계량기현황	기물번호	모델 및 등급	중지·해제 지침	봉인유무

공급규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중지·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통보자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중지·해제 일자	봉인 담당자	시스템 등록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개인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수집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 사용자, 사용금액, 결제기류, 접속기류, 공급중지기록 ("서비스 이용정보")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수집 및 이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입·잠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 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 홈페이지(www.b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징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p>* 이용기간 : 도시가스 공급신청(변경)일 ~ 해약일</p> <p>* 보유기간 : 공급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공급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로부터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p> <p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http://www.b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p>					
<p>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라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

[서식6]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용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신청인	① 성명		② 법인명		
	③ 주소 (가스사용장소)				(전화:)
시설 개요	④ 명칭		⑤ 사업의 종류		
	⑥ 소재지				(전화:)
개요	⑦ 시설장의 성명		⑧ 생년월일		
	⑨ 설치 연월일		⑩ 입소정원		
시설 설비	⑪ 가스사용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m ²	⑫ 기타에너지사용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⑬ 단독 가스계량기 설치 유무 (<input type="checkbox"/> 단독계량기 / <input type="checkbox"/> 공동계량기)				

「사회복지사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산업통상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고자 합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기적인 경감시설 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이전/휴업/폐업/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주)부산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 첨부서류	1. 사회복지시설 신고서(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1-1.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동의 거부시 경감불가)
--------	---

<후면 계속>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주)부산도시가스는 산업통상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필수)

1.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2. 수집 · 이용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정보) 명칭, 사업의종류, 소재지,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설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 기간 : 도시가스 계약종료(공급해지) 후 20일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고객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고객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가스공사 (가스도매사업자)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정보) 명칭, 사업의종류, 소재지,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설 전화번호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부산도시가스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시설명)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대표인(시설장)

(서명/인)

[서식7]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성명 및 연락처	(집 : _____, 핸드폰 : _____)			
접수관리번호				
고객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난방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중앙난방(공동주택) 대상자	
공동주택명	_____			
고객번호 (납부고지서상)				
주 소 (주민등록지)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9.07.01. 이전 1~3급)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5.18민주유공자(<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참여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받는다, <input type="checkbox"/> 한부모지원가정, <input type="checkbox"/> 확인서 발급대상)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	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세대주		자녀수(다자녀)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위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녀수 (위탁아동 제외)			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공통사항>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및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 부고시 제2025-24호)에 따른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이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이 안되는 경우,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1>에서 정하는 자 격증명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이 중지됨에 동의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부산도시가스 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 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고객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구비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생략 가능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 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안내사항

- ①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 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부산도시가스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②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8] 듀얼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번호
③ 소재지	본 사 :		
	사업장 :		
④ 관리자	부 서	성 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e-mail)
⑤ 통지구분	<input type="checkbox"/> 설 치 <input type="checkbox"/> 변 경 <input type="checkbox"/> 폐 쇄		⑥ 설치(변경)일자
⑦ 설치(변경) 내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인)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9조(계약의 준수) 제4항1호에 따라, 듀얼 연료설비 설치(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인)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서식9] 도시가스 사용용도 변경신청서

도시가스 사용용도 변경 신청서

(고객 상담센터 Tel : 1544-0009)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정보	④ 공급받는 장소			
	⑤ 신청자 주소			
	⑥ 전화번호	⑦ 이메일		
	⑧ 변경 사유			

※ (주)부산도시가스 담당자 작성란

계량기 정보		사용용도	
기물 번호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주택취사, <input type="checkbox"/> 주택난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업무난방, <input type="checkbox"/> 업무냉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주택취사, <input type="checkbox"/> 주택난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업무난방, <input type="checkbox"/> 업무냉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주택취사, <input type="checkbox"/> 주택난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업무난방, <input type="checkbox"/> 업무냉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주택취사, <input type="checkbox"/> 주택난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업무난방, <input type="checkbox"/> 업무냉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주택취사, <input type="checkbox"/> 주택난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업무난방, <input type="checkbox"/> 업무냉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주택취사, <input type="checkbox"/> 주택난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업무난방, <input type="checkbox"/> 업무냉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공급규정 제20조 제12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용 용도를 변경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통보자	(인 / 서명)		

- (주)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도시가스 사용 용도 변경 신청

•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급관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공급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부터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https://www.skens.com/busan/main/index.do>)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합니다.

※ 고객은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가스 사용 용도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필수)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

도시가스 공급규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 (2026.05.01.)>